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친 영향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 2019.6.12)

1. 최저임금 1만원은 <5당 후보 모두 공약한> 사회적 합의사항

- 2020년 최저임금 1만원 단계적 인상 (매년 15.6%, 1,180원씩 인상)
 - 2017년 대통령 선거 때 집권 여당인 민주당의 공약
- 민주당, 정의당, 바른정당 2020년 1만원 ↔ 국민의당, 자유한국당 2022년 1만원
 - 5당 후보 모두 1만원 공약
 - 목표 달성 시점의 차이가 있을 뿐, 최저임금 1만원은 사회적 합의 사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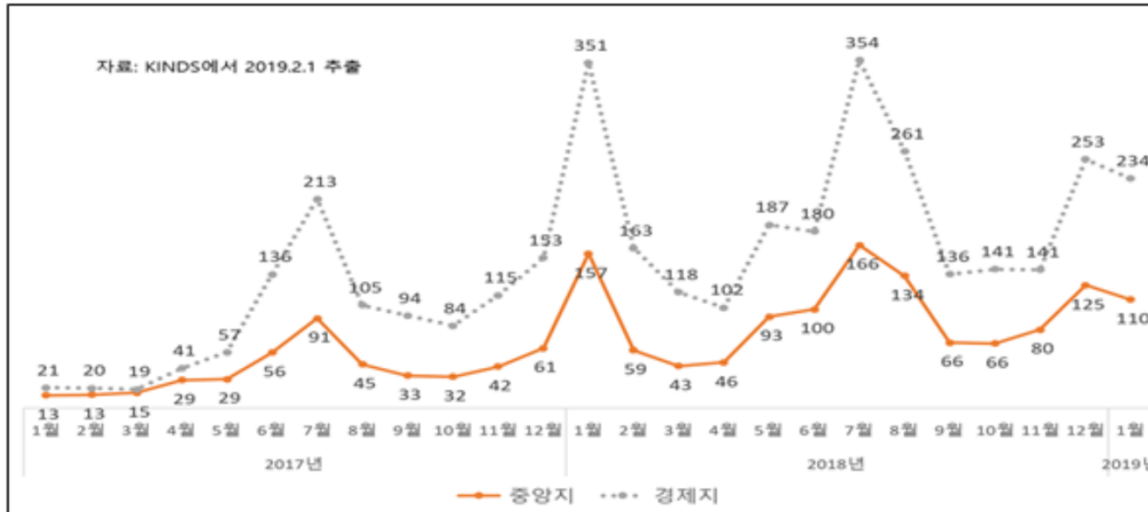
- 2017년 5월 대통령 선거, 문재인 대통령 당선
- 2017년 7월 최저임금위원회, 2018년 최저임금 심의·결정
 - 2018년 최저임금 1,060원(16.4%) 인상 : 6,470원 → 7,530원
 - 지나치게 빠른 인상? No. 예상대로.
 - 공약 7,200~7,500원 → 노사 7,300~7,530원
 - 일방 결정 ? No.
 - 노사공익 전원 참석, 표결 결과 15:12
- 2018년 최저임금 결정 후 보수언론 일제히 공세
 - 보수 진영의 국면전환 시도?
 - 소득주도 성장정책에 대한 공격?
- 2018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
 - 그러나 고용에 부정적 영향 미칠 수준인지는 판단하기 어려움. 실증분석 문제
 - 2019~20년 최저임금 수준을 결정할 때 긍정적 효과와 부정적 효과를 검증하면서 완급을 조절하면 될 일.

경과 2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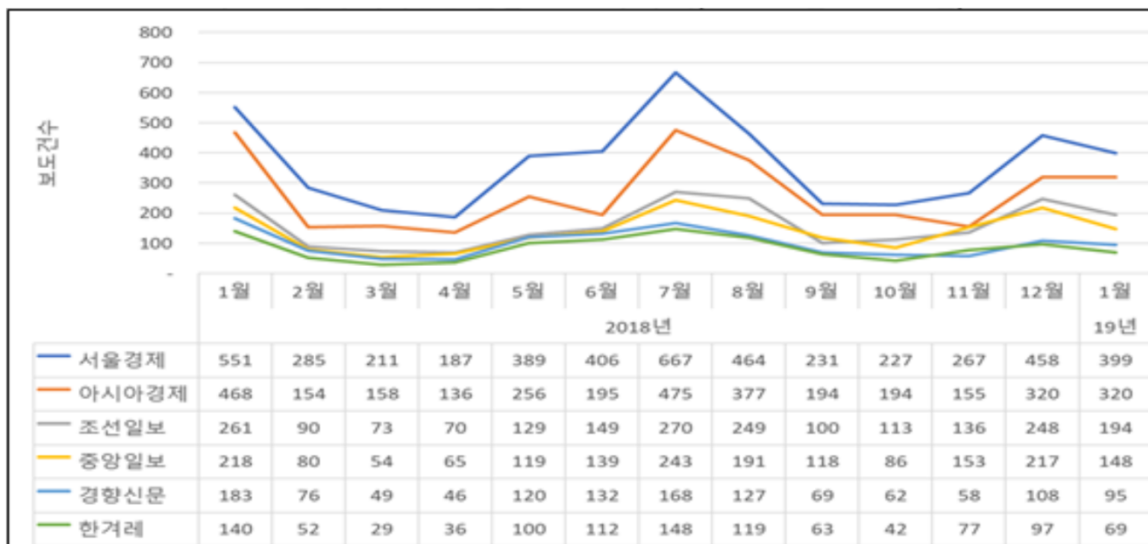
- 1년 만에 정부와 여당 후퇴
 -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 2019년 최저임금 인상 폭 하향 조정
 - 820원(10.9%) 인상 : 7,530원 → 8,350원
 - 사용자, 민주노총 불참 : 공익, 한국노총 참석 ⇒ 표결 결과 8:6
 - 문재인 대통령 대국민 사과 (공약 불이행)
 - 2019년 최저임금 결정기구 개편 추진
- 최저임금 1만원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
 - '2020년 1만원' 공약 불이행 → 언제까지(2021년? 2022년?) 이행할 것인지 밝혀야

	최저임금(원)				인상액(원)	인상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0년 1만원	8,350	10,000			1,650	19.8
2021년 1만원	8,350	9,175	10,000		825	9.9
2022년 1만원	8,350	8,900	9,450	10,000	550	6.6

'기승전 최저임금' 언론보도는 경제지가 주도



- 2017년 6월 이후 최저임금 기사
 - 경제지 > 일간지
 - 경제지 주도



- 2018년 최저임금기사
 - 서울경제(4343건)
 - 아시아경제(3082건)
 - 조선일보(1888건)
 - 중앙일보(1683건)
 - 경향신문(1198건)
 - 한겨레신문(1015건)

2. 최저임금 인상 속도가 지나치게 빠르다 ?

- 2018-19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예년에 비해 높은 것은 사실.
- But 최저임금 1만원이 되려면 아직도 1,650원(20%) 더 인상해야 함.
 - 인상률이 높았어도 만원에 크게 못 미치는 것은 그동안 최저임금이 너무 낮았기 때문.
 - 인상률이 중요한 게 아니라 최저임금으로 노동자와 그 가족이 최소한의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가가 중요.
- 2018-19년 최저임금을 빠르게 인상한 나라들

<표> 법정 최저임금 인상률

2018년				2019년			
OECD 회원국		OECD 비회원국		OECD 회원국		OECD 비회원국	
한국	16.4%	루마니아	52.0%	리투아니아	38.4%	아르헨티나	18.9%
터키	14.2%	러시아	26.5%	터키	26.0%	러시아	18.9%
라트비아	13.2%	마케도니아	19.0%	스페인	22.3%	우크라이나	12.1%
체코	10.9%	아르헨티나	17.9%	캐나다	12.6%	불가리아	9.8%
슬로바키아	10.4%	우크라이나	16.3%	한국	10.9%	몰도바	9.7%

자료: WSI, Minimum Wage Report 2018, 2019

3. 최저임금 수준 국제비교

- 시간당 최저임금
 - 2017년 5.7달러, 2018년 5.9유로, 2019년 6.4유로로 조금씩 개선
 - 2019년에도 OECD 회원국 평균 수준(6.4유로), 순위는 중간(12/25개국)
-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
 - 평균값 2017년 41.4%로 OECD 평균 수준(41.1%), 순위는 중간(15/29개국)
 - 중위값 2017년 52.8%로 OECD 평균 수준(52.5%), 순위는 중간(13/29개국)

	시간당 최저임금						최저임금 비율	
	2017년(US\$)		2018년 1월(유로화)		2019년 1월(유로화)		2017년(%)	
	환율	구매력	환율	구매력	환율	구매력	평균값	중위값
한국	5.7	6.4	5.9	5.8	6.4	6.4	41.4	52.8
OECD평균	6.2	6.7	6.2	6.3	6.4	6.3	41.1	52.5
한국순위	14/29	15/29	13/25	13/25	12/25	12/25	15/29	13/29

자료: OECD.Stat 2019년 5월 4일 추출; WSI, Minimum Wage Report 2018 & 2019.

주: 최저임금 비율은 풀타임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비율임.

중간은 된다 ?

- 2017년 한국의 최저임금 비율 : 평균값 기준 41.4%(15/29개국), 중위값 기준 52.8%(13/29개국)
 - 정부가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에서 '1인 이상 사업체 풀타임' 기준으로 작성한 최저임금 비율을 OECD에 보고했기 때문.
- 통계자료와 기준을 달리 하면 한국의 2017년 최저임금 비율은
 - 평균값 기준 30.0~38.5%(20~28위), 중위값 기준 43.5~48.5%(15~23위)로 낮아짐.
 - 일본은 5인 이상, 유럽연합은 10인 이상 사업체 조사결과 보고

		사업체노동력조사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			
		1인이상 상용직		5인이상 상용직		1인이상 풀타임		5인이상 풀타임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정액 급여	통상 임금
최저임금 비율(%)	평균값대비	38.2	32.7	35.5	30.0	41.0	36.1	38.5	33.2
	중위값대비					52.4	48.5	48.3	43.5
순위	평균값대비	21	27	23	28	15	22	20	26
	중위값대비					15	15	15	23

주: 통상임금 = 정액급여+특별급여

- 산업별 단체협약으로 최저임금을 결정하는 8개국까지 포함하면 그만큼 한국의 순위는 낮아짐.
 - 스칸디나비아 국가(덴마크, 핀란드, 스웨덴,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와 스위스, 오스트리아, 이태리는 노조 조직률과 단체협약 적용률이 높아 법정 최저임금제를 도입하지 않고 있음.

2018년 최저임금이 중위임금의 60%?

- 노동부가 OECD에 보고한 최저임금 비율
 -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 2017년 41.4% → 2018년 46.1%(4.7%p 상승)
 -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 2017년 52.8% → 2018년 58.6%(5.8%p 상승)
- 노동부의 잘못된 계산방식 (2018년)
 -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 (최저임금 7,530원 X 209시간) / 월임금총액 평균값
= 1,574,000원 / 3,415,000원(월노동시간 170시간) = 46.1%
 -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 (최저임금 7,530원 X 209시간) / 월임금총액 중위값
= 1,574,000원 / 2,687,000원(월노동시간 160시간) = 58.6%
 - (문제점) 주휴수당 포함 / 노동시간 불일치
- 2018년 최저임금 비율(고용형태, 1인 이상)
 - 평균임금 대비 최저임금 : 정액급여 41.9%, 통상임금 36.6%
 - 중위임금 대비 최저임금 : 정액급여 52.8%, 통상임금 48.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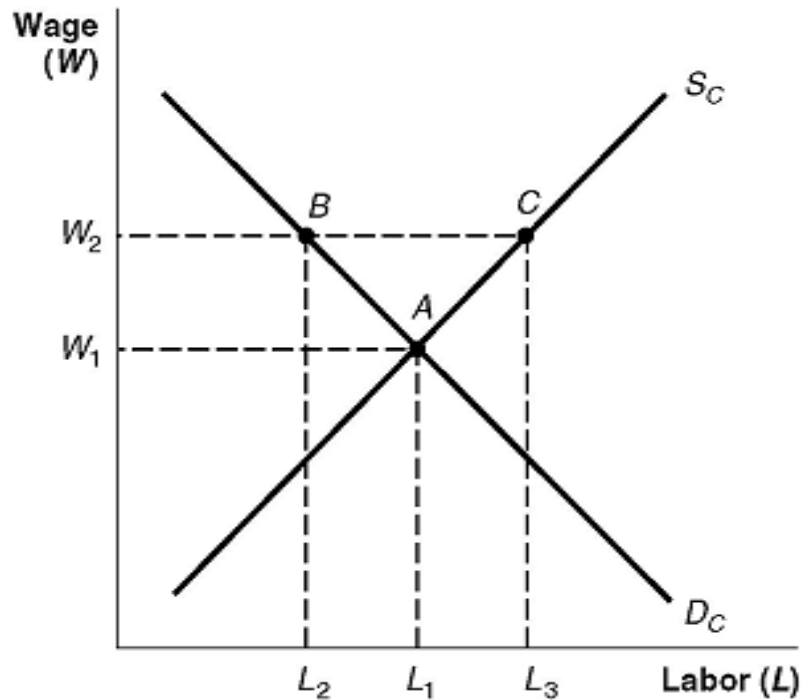
<표> 2018년 통계 자료와 기준에 따른 최저임금 비율

		사업체노동력조사(상용직)				고용형태별근로실태조사(상용직 풀타임)			
		시간당 임금(원)		최저임금 비율(%)		시간당 임금(원)		최저임금 비율(%)	
		정액급여	통상임금	정액급여	통상임금	정액급여	통상임금	정액급여	통상임금
평균값	1인이상	17,890	21,007	42.1	35.8	17,992	20,583	41.9	36.6
	5인이상	19,158	22,864	39.3	32.9	19,151	22,252	39.3	33.8
	10인이상	19,903	24,090	37.8	31.3	20,635	24,886	36.5	30.3
중위값	1인이상					14,257	15,388	52.8	48.9
	5인이상					15,349	16,888	49.1	44.6
	10인이상					16,846	19,688	44.7	38.2

4. 최저임금의 임금·고용효과(해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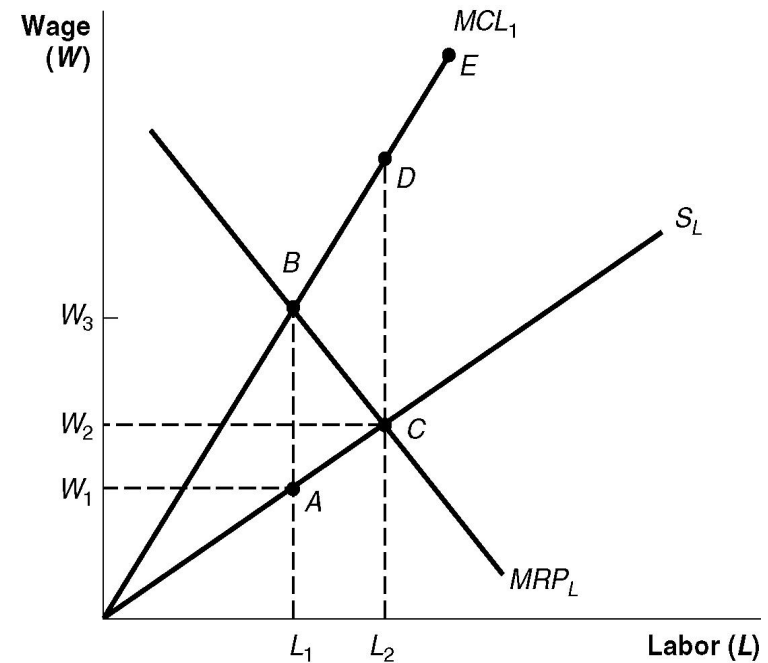
A. 이론

완전경쟁시장



● 임금 ↑ → 고용 ↓

불완전경쟁시장(수요독점)



● 임금 ↑ → 고용 ↑
(일정 수준 초과시 고용 ↓)

B. 실증분석

1) OECD(1998) *Employment Outlook*, OECD 국가

- 임금효과
 - 임금불평등 완화에 긍정적. 연령간, 남녀간 임금격차 축소
 - 최저임금 비율이 높은 나라일수록 임금불평등과 저임금계층 낮음.
- 고용효과
 - 이론/실증 모두 최저임금의 고용효과에 대한 합의 존재하지 않음.
 - 최저임금수준이 높을수록 10대 청소년 일자리 상실 가능성 높음.
 - 여성, 파트타임 등 성인고용에 대한 부정적 효과는 발견되지 않음.
- 빈곤/분배효과
 - 노동자가구: 빈곤축소, 소득분배구조 개선
 - 전체 가구: 효과감소, 가족구성/취업자구성 따라 다양한 결과
- EITC(근로장려세)가 더 효과적?
 - EITC는 국가 재정 소요, 저임금 노동자들을 빈곤의 덫에 빠뜨릴 가능성 .
 - 최저임금제와 EITC는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는 게 바람직.

2) 미국

- 1980년대 : 최저임금 인상은 10대 청소년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친다.
 - Brown et al.(1982) : 시계열 분석결과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10대는 0-1.5%, 20대 초반은 10대보다 부정적 효과 더 작다. 성인은 발견 안 됨. 1977년 미국 최저임금연구위원회 4년 동안 1700만\$ 들인 연구결과 요약.
 - Reynolds et al(1991) : 10대를 제외한 다른 집단(여성, 파트타임 등 성인)은 최저임금의 부정적 고용효과가 발견되지 않음.
- 1990년대 : 10대 청소년도 부정적 효과 발견되지 않고 때로는 긍정적 효과.
 - Card & Krueger(1995) : 미국
 - Machin & Manning(1994) : 영국
- 이후에도 계속 논쟁(Card vs Neumark)
- Chapman(2004) :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최저임금의 고용영향 크지 않다.

3) 2000년대 메타분석

- Doucouliagos and Stanley(2009)
 - 미국에서 10대 연소자 고용효과를 분석한 64개 연구(1972-2007년) 메타분석
 - 발표된 연구결과는 선택편의에 오염되어 실제보다 부정적 효과 크게 보고.
 - 선택편의(Publication Selection Bias)를 수정하면 영향이 없거나 매우 작다.
- Leonard, Stanley and Doucouliagos(2014)
 - 영국에서 최저임금의 고용효과를 측정한 16개 연구 메타분석 결과, 최저임금의 (-) 고용 효과 발견되지 않음.
 - ① 고용효과를 최소화하는 방식으로 최저임금을 조정하거나,
 - ② 기업이 생산성, 가격, 이윤, 노동시간 조정 등을 통해 부정적 고용효과를 상쇄하거나,
 - ③ 경쟁노동시장 모델보다 수요독점 모델이나 효율임금가설이 영국 노동시장을 더 잘 설명하기 때문

● Schmitt(2013)

- '2000년 이후 최저임금의 고용효과 연구는 영향이 없거나 작다는 게 대세.
- 가능한 조정채널 11가지를 검토한 결과, 가장 중요한 조정채널은 노동이동 감소, 조직 효율성 개선, 고소득자 임금 덜 인상, 소폭의 가격 인상이며, 저임금 노동자 비중이 높은 사용자들도 이러한 조정수단만으로 고용감소를 회피하기에 충분.

노동시간 단축		
비임금 급여 축소	기업복지, 사회보험료 축소	
교육훈련 축소		
고용구성 변화	미숙련자를 숙련자로 대체	
제품가격 인상		○
조직 효율성 개선		○
노동자들의 효율임금 반응		
임금격차축소	고임금자 임금 덜 올림	○
이윤감소		
수요증가		
이직률 감소	신규채용, 훈련비용 감소	○

5.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임금효과

2018년 최저임금 인상 수혜자와 임금인상액 : 552만명 7.2조원(임금총액 1% 미만)

구 분	사각지대(1)	직접영향(2)	간접영향(3)	전체(4=2+3)
수(천명)	1,075	3,155	2,360	5,515
비율(%)	5.4	15.9	11.9	27.7
1인당 월평균 임금인상액(만원)		17.4	2.1	10.8
1인당 월평균 임금인상률(%)		17.6	1.4	10.6
월 임금인상액 합계(억원)		5,485	484	5,969
연 임금인상액 합계(억원)		65,821	5,806	71,626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부가조사(2017년 8월); 김유선(2018),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자들 임금은 얼마나 오를까"(KLSI 이슈페이퍼 87호)에서 재인용.

주: (1) 최저임금 사각지대 = 2017년 최저임금(6,470원)의 80% 미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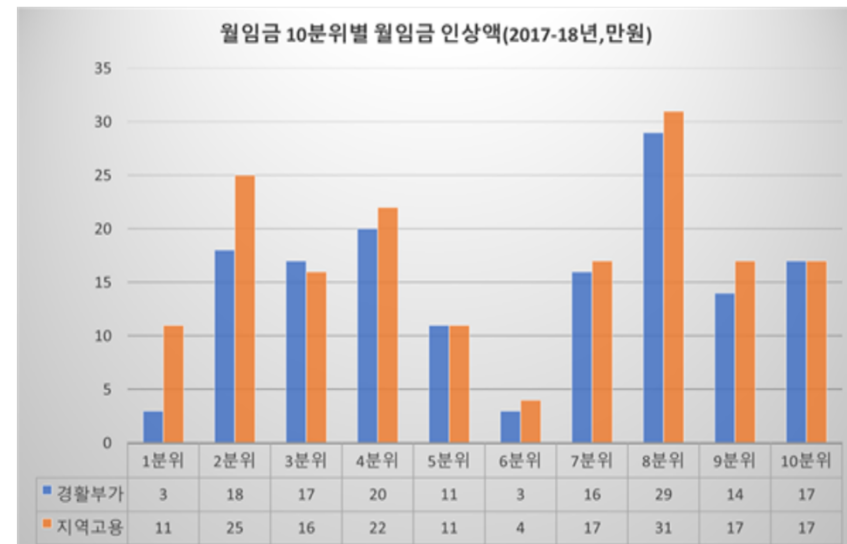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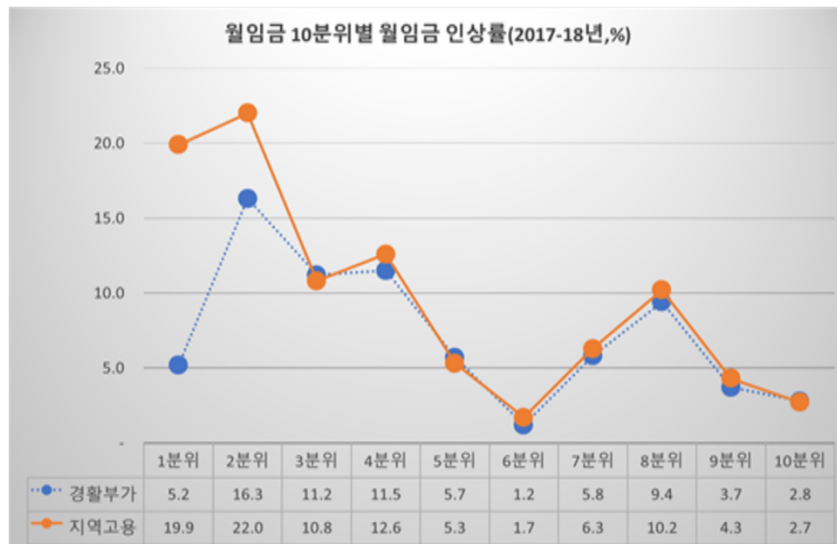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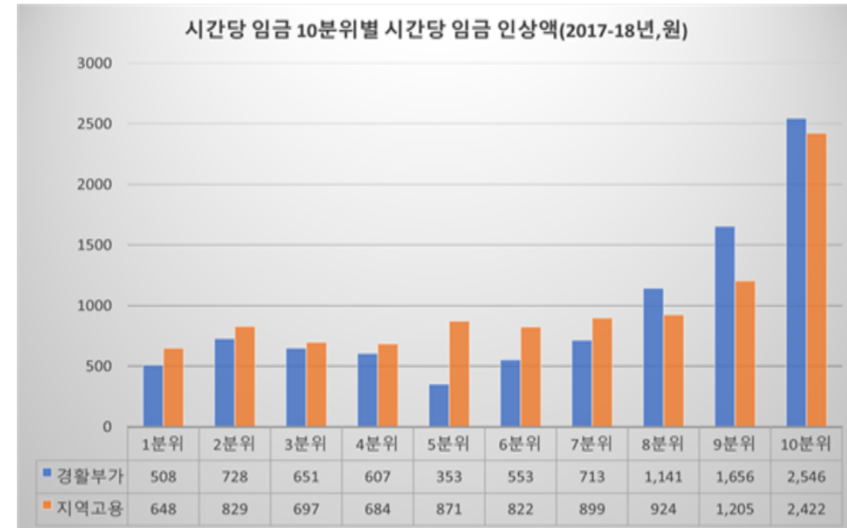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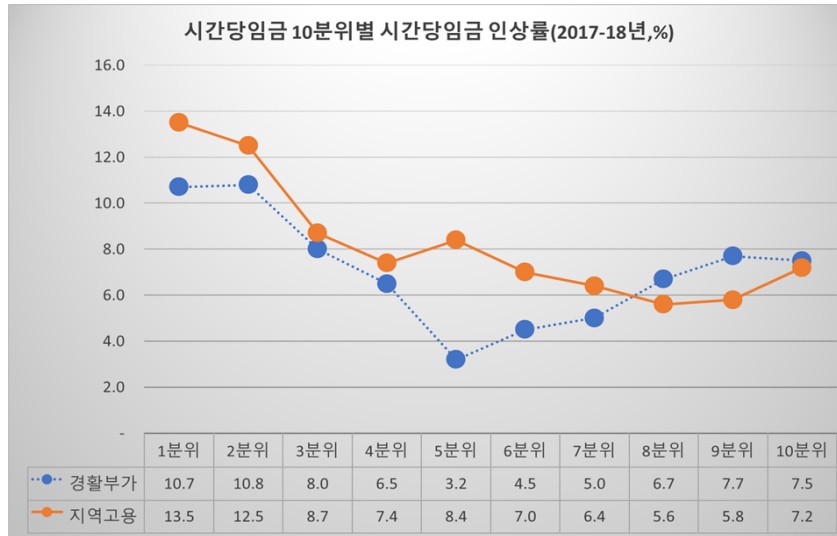
(2) 직접영향 = 2017년 최저임금(6,470원)의 80% ~ 2018년 최저임금(7,530원)

(3) 간접영향 = 2018년 최저임금(7,530원) ~ 2018년 최저임금의 115%(8,659.5원)

(4) 전체 = 직접영향+간접영향

- 실제로는 7.2조원에 크게 못 미칠 것
 - 최저임금 미만을 5.4% 가정 / 2018년도 임금인상 미고려
 - 2018년 피용자보수총액 864조원(임금및급여 744조원)의 1% 미만
- (함의) 최저임금 인상만으로 소득주도 성장정책 불가능.
 - 재정지출 확대, 소득재분배, 경제민주화, 초기업 단체교섭 정책 병행되어야 함.

10분위별 임금인상률(액)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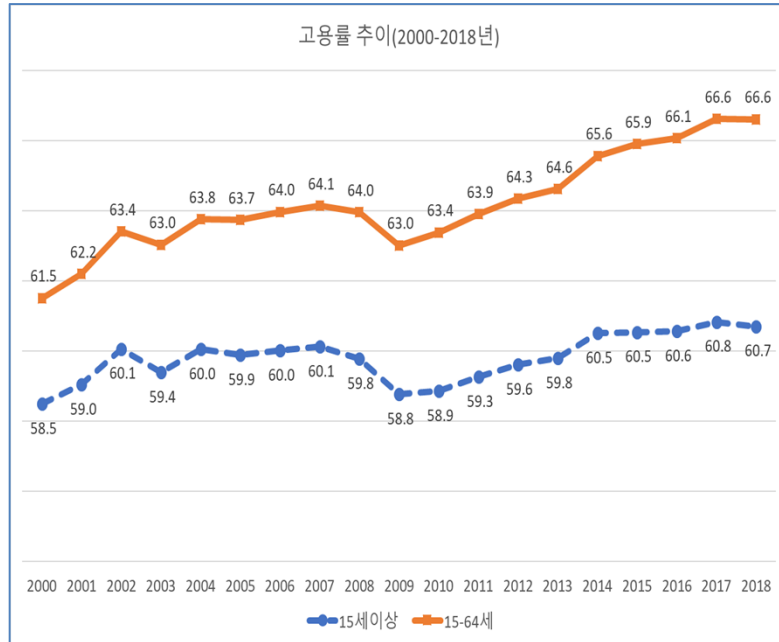


임금불평등/저임금계층 축소

- 임금불평등(P9010)
 - 경찰부가 : (시간당임금) 4.13배 → 3.75배 (월임금) 5.63배 → 5.04배
 - 지역고용 : (시간당임금) 4.10배 → 3.72배 (월임금) 5.00배 → 4.59배
 - 고용형태 : (시간당임금) 4.42배 → 4.06배 (월임금) 6.25배 → 5.96배
- 지니계수
 - 경찰부가 : (시간당임금) 0.3160 → 0.3098 (월임금) 0.3293 → 0.3289
 - 지역고용 : (시간당임금) 0.3169 → 0.3092 (월임금) 0.3307 → 0.3282
 - 고용형태 : (시간당임금) 0.351 → 0.333 (월임금) 0.376 → 0.367
- 저임금계층(중위임금의 2/3 미만)
 - 경찰부가 : (시간당임금) 21.4% → 15.7% (월임금) 20.5% → 17.9%
 - 지역고용 : (시간당임금) 22.5% → 15.7% (월임금) 20.9% → 17.4%

6. 고용효과

1) 최저임금 때문에 고용참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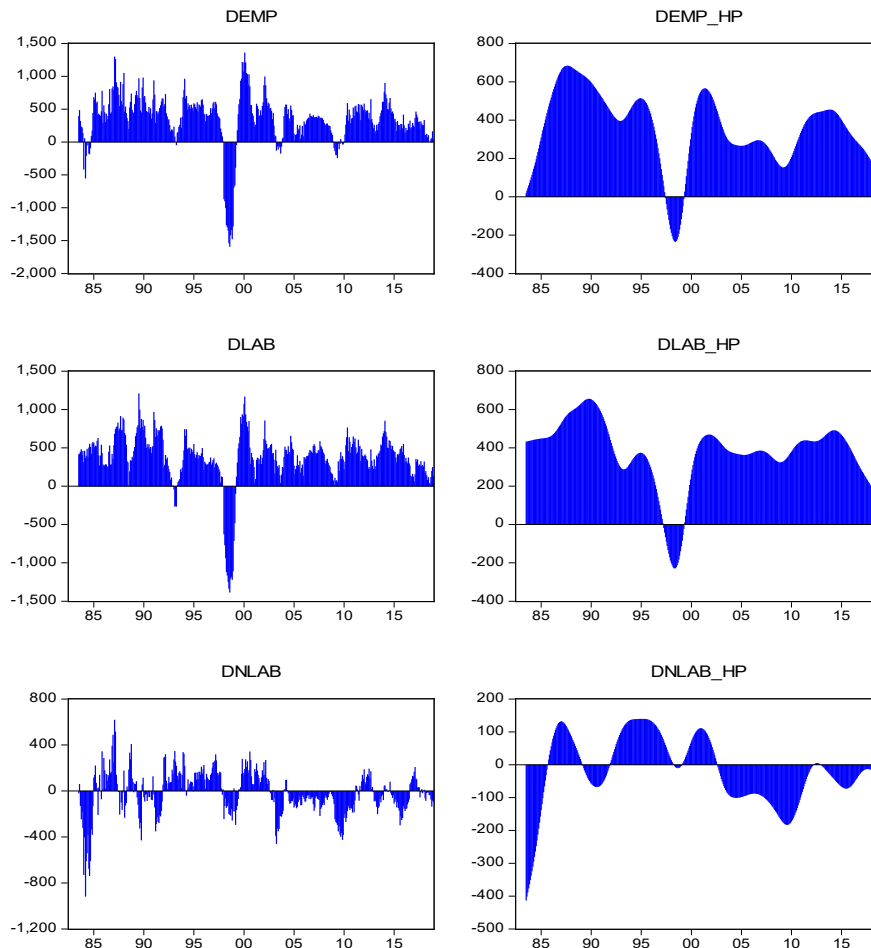
- 경제성장률 : 2017년 3.1% → 2018년 2.7%
- 고용률 : 최고수준
 - 15세 이상 : 60.8% → 60.7%(-0.1%p)
 - 15-64세 : 66.6% → 66.6% (불변)
- 고용참사? No.

연도	경제성장률(%)	15세 이상						15-64세					
		수준			증감			수준			증감		
		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고용률 (%)	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고용률 (%)	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고용률 (%)	인구 (천명)	취업자 (천명)	고용률 (%)
2010	6.5	40,825	24,033	58.9	524	345	0.1	35,464	22,480	63.4	339	345	0.4
2011	3.7	41,387	24,527	59.3	562	494	0.4	35,860	22,920	63.9	396	440	0.5
2012	2.3	41,857	24,955	59.6	470	428	0.4	36,090	23,222	64.3	230	302	0.4
2013	2.9	42,304	25,299	59.8	447	344	0.2	36,282	23,449	64.6	192	227	0.3
2014	3.3	42,795	25,897	60.5	491	598	0.7	36,518	23,944	65.6	236	495	0.9
2015	2.8	43,239	26,178	60.5	444	281	0.0	36,705	24,192	65.9	187	248	0.3
2016	2.9	43,606	26,409	60.6	367	231	0.0	36,839	24,342	66.1	134	150	0.2
2017	3.1	43,931	26,725	60.8	325	316	0.3	36,860	24,559	66.6	21	217	0.6
2018	2.7	44,182	26,822	60.7	251	97	- 0.1	36,796	24,511	66.6	- 64	- 48	- 0.0

자료: 통계청 KOSIS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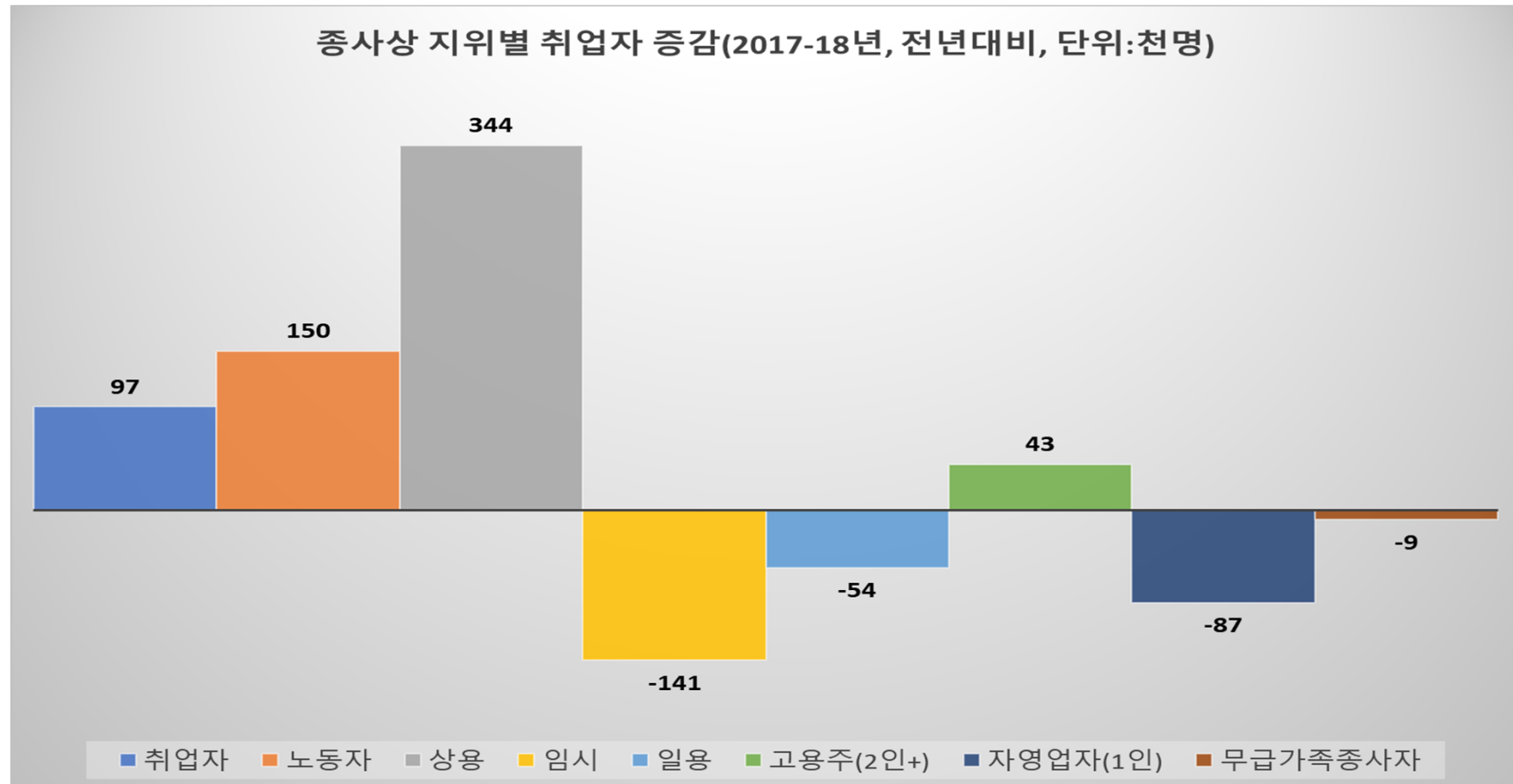
2) 최저임금 때문에 취업자 증가세 둔화?

월별 취업자 수 증가와 장기 추세선
(1983.7~2018.12, 전년 동월 대비, 단위: 천명)



- 취업자 증가세 둔화? Yes.
- 취업자 증가세 둔화가 최저임금 때문? No.
 - 취업자 증가는 2013년 11월(45.5만 명)을 정점으로 감소세로 돌아선 장기추세를 반영한 것일 뿐.
 - 생산가능인구 감소 + 제조업 구조조정 + 골목상권 붕괴 + 내수침체 지속 + 경기하강
- 노동자 증가는 2014년 4월(49.1만명)을 정점으로 감소세
- 자영업자 등 비임금근로자는 2002년 9월부터 그 수가 절대적으로 감소하고 있음.
 - 단 2012년 4-12월만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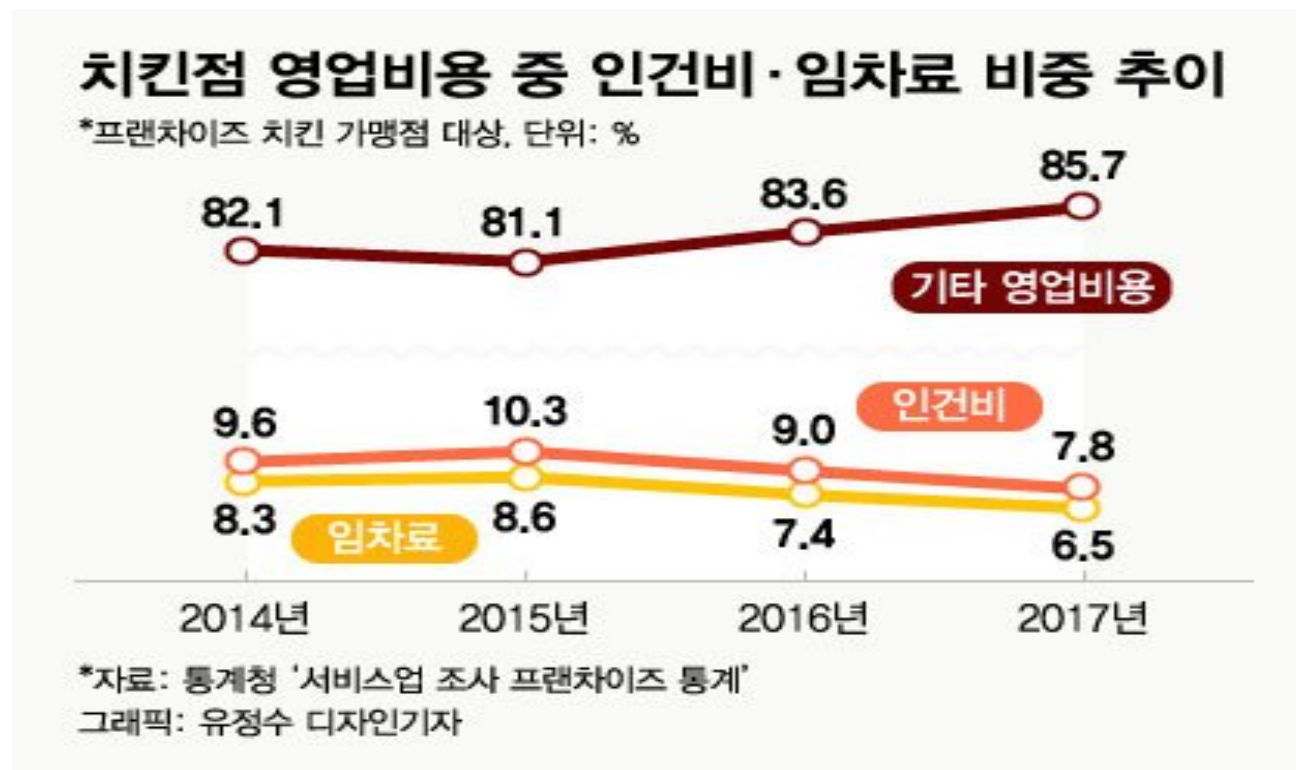
3) 종사상 지위별 취업자 증감



- 2017-18년 취업자 9.7만명 증가
 - 상용직 34.4만명 증가; 임시직 14.1만명 / 일용직 5.4만명 감소
 - 고용주(2인이상) 4.3만명 증가; 자영업자(1인) 8.7만명, 무급가족 9천명 감소
 - 도소매업, 음식숙박업도 자영업자(1인) 감소, 고용주(2인 이상) 증가
- 최저임금 때문? No. 경기침체/내수부진 때문? Yes.

그 치킨집이 망한 이유, 최저임금이 아니었다(머니투데이 2019.6.5)

[같은생각 다른느낌]통계청 '서비스업 조사' 결과
분석해보니...인건비 비중 감소 불구 기타영업비용 급증



4) 실증분석 결과

가. 2018년 부정적 고용효과 발견되지 않는다

- 1) 홍민기(2018),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과 노동시간에 미친 영향'
 - 고용량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1~2월에는 노동시간을 유의미하게 단축. But 3월에는 통계적 유의성 사라짐.
- 2) 황선웅(2018), '최저임금 인상의 경제적 효과 분석'
 - 고용률에 미치는 영향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2017년 10월부터 2018년 2월까지 노동시간 유의미하게 단축. 3월 이후 유의성 사라짐
- 3) 이병희(2019), '최저임금 인상의 효과분석: 사업체 패널자료를 이용하여'
 - 모델에 따라 고용량(근로자수)에 유의미한 (+) 영향 또는 유의미한 영향 미치지 않음.
 - 노동시간에 미친 영향은 상용직은 유의미한 (-) 효과, 임시직은 유의미한 영향 없음.
- 4) 오상봉(2019), '최저임금 인상 및 관련 정책의 고용효과'
 - 고용에 미치는 영향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노동시간에 유의미한 (-) 영향 미침.
- 5) 성재민(2019), '최저임금의 임금, 소득에 대한 영향'
 - 최저임금보다 낮은 구간에서는 노동자수가 줄고 최저임금보다 높은 구간에서는 노동자수가 증가하는데,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파급효과는 최저임금의 약 120%로 제한됨.
 - 2018년은 긍정/부정적 영향 없고, 2016년은 부정, 2014/2017년은 긍정적 영향 나타남.
- 6) 황선웅(2019),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 2013-2018년'
 - Difference GMM, System GMM, CCEP, CCEMG 등의 모형으로 분석한 결과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나. 2018년 부정적 고용효과 매우 크다

- 1) 이정민·김대일(2018, 2019),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 고용증가율에 유의미한 (-) 영향; 2018년 고용증가율 하락 중 ¼이 최저임금 인상효과
 - 주44시간 전일제 일자리 기준; 1952-1992년 출생 취업자(고용원이 있는 자영업자 제외)
 - 이정민·김대일(2018)의 초안은 취업자수 16-17만명 감소 추정
- 2) 김낙년(2019), '한국의 최저임금과 고용, 2008-2018년'
 - 지역고용조사 자료를 고정효과(FE) 모형으로 분석.
 -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고용이 0.5%(근로자수 10만명) 감소
 -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임금노동자 15.1~22.2만명 감소
- 3) 강창희(2019),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규모에 미치는 영향'
 - 고용형태별 근로실태조사(2008-17년) 자료를 집군추정법으로 분석
 - 실질 최저임금이 10% 인상되면 고용 0.65~0.79% 감소
 - 2018년 실질 최저임금 14.5% 인상에 단순 대입하면 임금노동자 18~22만명 감소 추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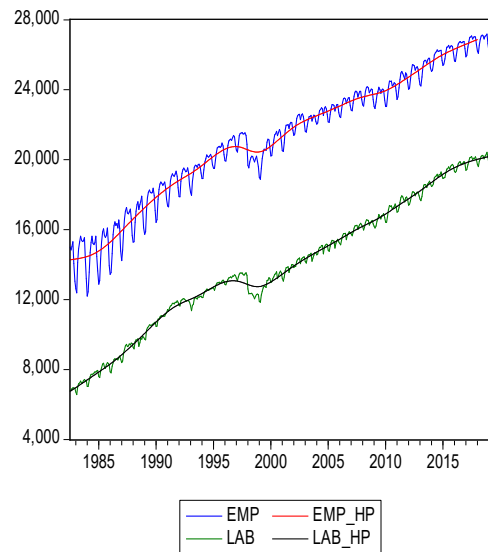
다. '2018년 부정적 고용효과가 크다'는 연구결과 비판

- 1) 황선웅(2019),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의 고용효과: 부정적 영향의 강건성 검토'
 - 이정민·김대일(2018)의 분석방법 문제점 제기.
 - ① 고용(노동자수) 대신 총노동시간(취업자수 X 노동시간)
 - ② 연령 대신 출생연도(1952-1992년생) 사용 → '15세 이상' 대신 2017년은 25-65세, 2018년은 26-66세 분석
 - 이상의 문제점을 시정하면 2018년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통계적으로 유의한 (+) 영향을 미쳤다는 결과가 도출됨.
- 2) 황선웅(2019), '최저임금 인상이 고용에 미친 영향, 2013-2018년'
 - 저임금과 고용부진 간 상관성(최저임금변수의 내생성), 경기변동의 집단간 이질적 영향 등을 통제하지 않으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됨.
 - 하지만 이들 요인을 통제하거나 Difference GMM, System GMM, CCEP, CCEMG 등의 모형으로 분석하면, 최저임금이 고용에 미치는 효과가 통계적으로 유의미하지 않음.
 - 2018년 고용부진의 주된 원인은 최저임금 인상이 아닌 경기침체일 가능성이 높음. 적극적 경기대응 정책이 필요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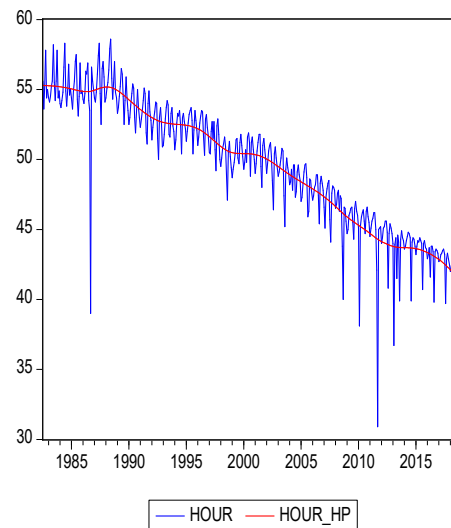
참고1. 이정민·김대일(2019)

① 고용(노동자수) 대신 총노동시간(취업자수X노동시간) 사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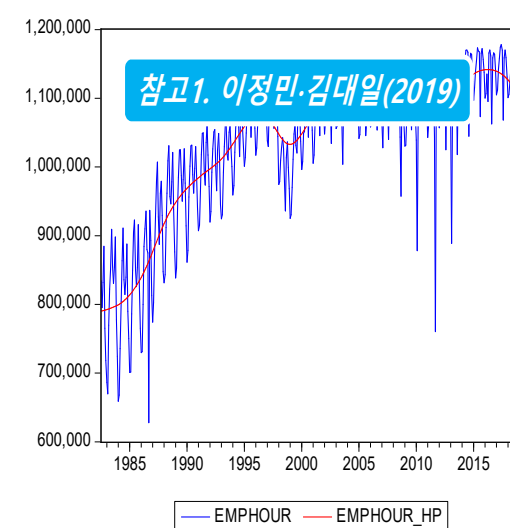
고용(취업자,노동자)



주당 노동시간



취업자X노동시간



	수(천명,천명,시간,천시간)				증가율(% , 전년대비)			
	EMP	LAB	HOUR	EMPHOUR	EMP	LAB	HOUR	EMPHOUR
	취업자	노동자	주당 노동시간	취업자* 노동시간	취업자	노동자	주당 노동시간	취업자* 노동시간
2015	26,178	19,402	43.7	1,143,332	1.08	2.34	-0.46	0.62
2016	26,409	19,669	43.0	1,135,581	0.88	1.38	-1.55	-0.68
2017	26,725	19,934	42.8	1,143,842	1.20	1.35	-0.47	0.73
2018	26,822	20,084	41.5	1,113,672	0.36	0.75	-2.98	-2.64

자료: 경제활동인구조사

② 연령 대신 출생연도(1952-1992년생) 사용

→ '15세 이상' 대신 2017년은 25-65세, 2018년은 26-66세 분석

→ 취업자 '9만7천명 증가'가 '11만4천명 감소'로 바뀜.

조사연도	출생연도	연령	인구(천명)	취업자(천명)	노동자(천명)	고용률(%)
2017년	1952년 이전	66세이상	6,799	2,016	1,030	29.7
	1952-1992년	25-65세	31,551	23,309	17,570	73.9
	1992년 이후	15-24세	5,585	1,400	1,334	25.1
	전연령		43,935	26,725	19,934	60.8
2018년	1952년 이전	67세이상	6,606	1,905	976	28.8
	1952-1992년	26-66세	31,486	23,195	17,462	73.7
	1992년 이후	15-25세	6,087	1,722	1,646	28.3
	전연령		44,179	26,822	20,084	60.7
증감	1952년 이전		-193	-111	-54	-0.8
	1952-1992년		-65	-114	-108	-0.2
	1992년 이후		502	322	312	3.2
	전연령		244	97	150	-0.1

자료: 통계청 경제활동인구조사

참고2. 김낙년(2019)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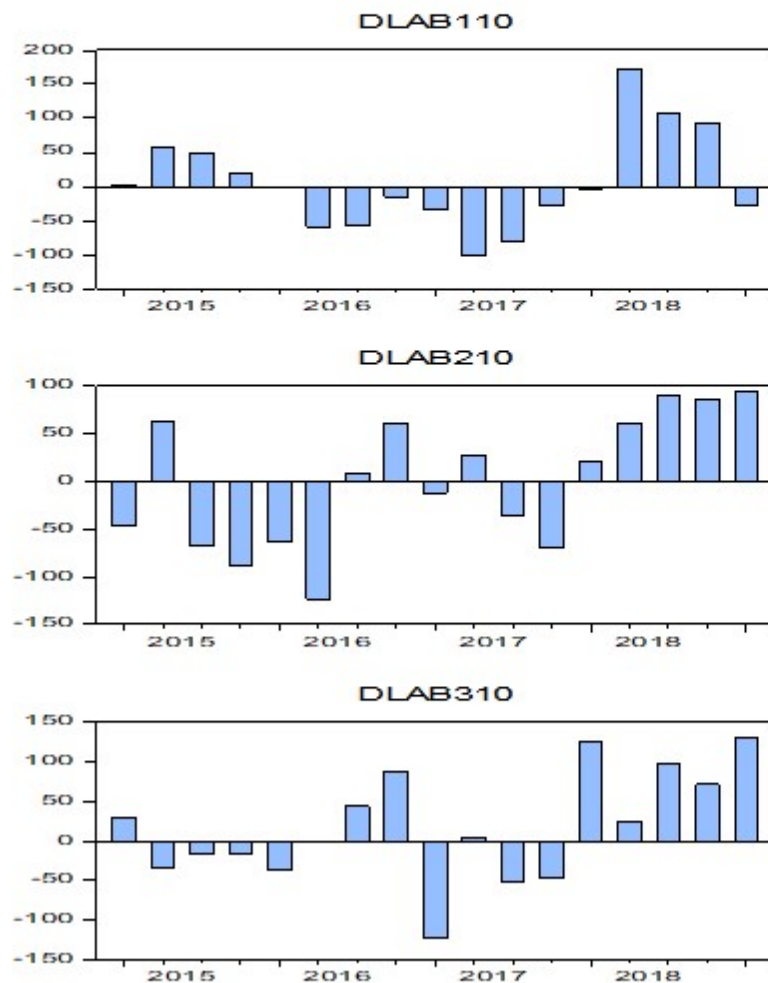
- 김낙년(2019)은 고정효과(FE) 모델로 분석한 결과 유의미한 (-) 고용효과를 보고하고 있음.
- 이에 대해 황선웅(2019)은 고정효과(FE) 모델로 분석하면 유의미한 (-) 고용효과를 보여주지만, 고정효과 모델에서 시간 추세를 통제하거나, Difference GMM, System GMM, CCEP, CCEMG 등의 모형으로 분석하면 통계적으로 유의미한 고용효과를 발견할 수 없다고 보고하고 있음.

<표 3> 인적특성*지역 패널을 이용한 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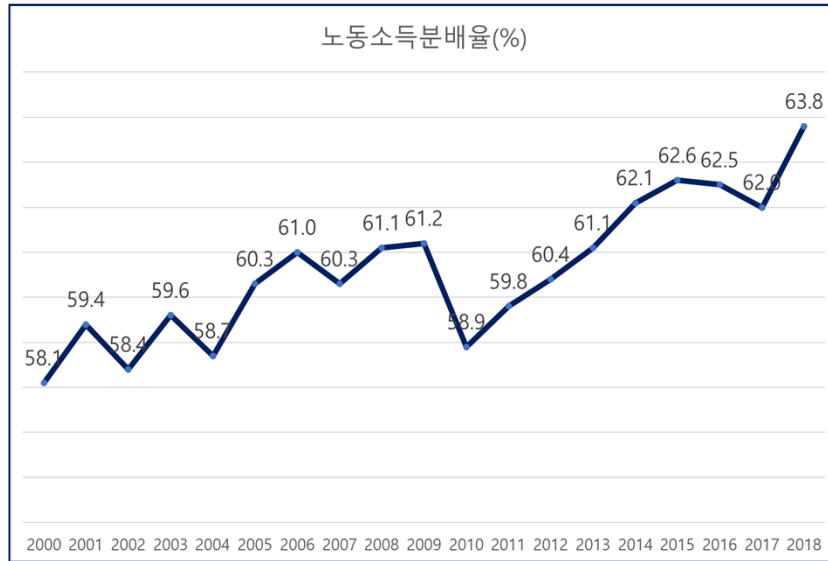
	FE	FE 선형시간추세	FE 제곱시간추세	Difference GMM	System GMM	CCEP	CCEMG
최저임금적용률	-0.090** (0.034)	-0.040 (0.075)	-0.102 (0.089)	0.200 (0.201)	-0.012 (0.082)	-0.109 (0.072)	-0.104 (0.068)
인구변화	0.993*** (0.025)	0.989*** (0.028)	0.973*** (0.030)	0.784*** (0.044)	0.812*** (0.042)	0.941*** (0.061)	1.243*** (0.080)
재학률변화	-1.419*** (0.136)	-1.406*** (0.149)	-1.383*** (0.164)	-1.636*** (0.191)	-1.686*** (0.193)	-1.819*** (0.272)	0.006 (0.705)
고용변화 전기값				-0.173*** (0.021)	-0.169*** (0.020)		
집단고정효과	Y	Y	Y	Y	Y	Y	Y
시간고정효과	Y	Y	Y	Y	Y	Y	Y
선형시간추세		Y	Y				
제곱시간추세			Y				
R2	0.376	0.334	0.295	-	-	0.210	0.300
관측값 수	6,166	6,166	6,166	5,515	6,167	6,166	6,166
집단 수	650	650	650	650	651	650	650

7. 소득효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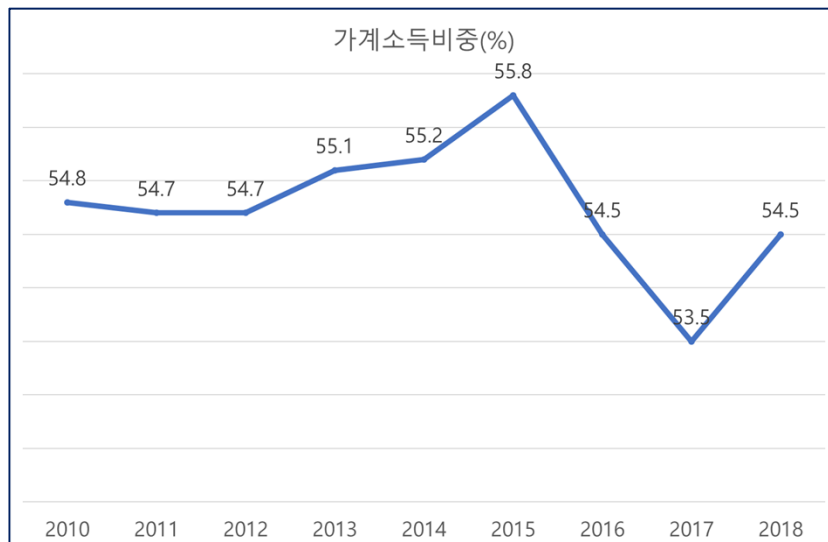
<그림> 하위 1-3분위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 증감
(전년 동기 대비, 2인 이상 가구, 단위:천원)



- 가계동향조사는 노동시간을 조사하지 않고, 가구당 취업인원 수에 민감하고, 근로소득, 사업소득, 재산소득, 이전소득 등으로 구성된 월가구소득이기 때문에, 가계동향조사의 하위분위 근로소득 동향을 최저임금과 직접 연관시키는 것은 무리가 있음.
- 그러나 좌측 그림에서 하위 1-3분위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이 2015-17년 계속 감소하다가 2018년 (+)로 돌아선 것은 확인할 수 있음.
- (함의) 2018년 최저임금 인상으로 하위 1-3분위 근로자가구의 근로소득 감소 추세가 멈추고 (+)로 돌아섬.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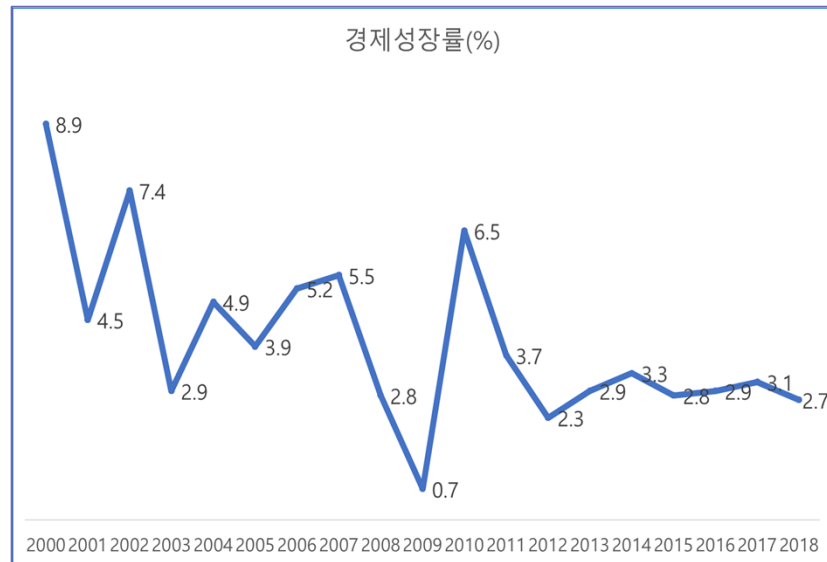


- 노동소득분배율
 - 2015년 62.6%에서 2016년 62.5%, 2017년 62.0%로 하락
 - 2018년 63.8%로 1.8%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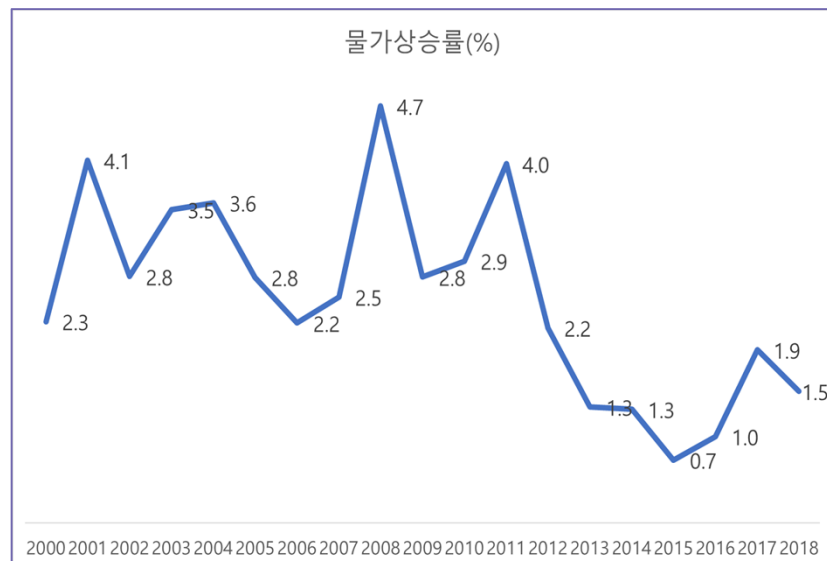


- 가계소득 비중
 - 2015년 55.8%에서 2016년 54.5%, 2017년 53.5%로 하락
 - 2018년 54.5%로 1.0%p 증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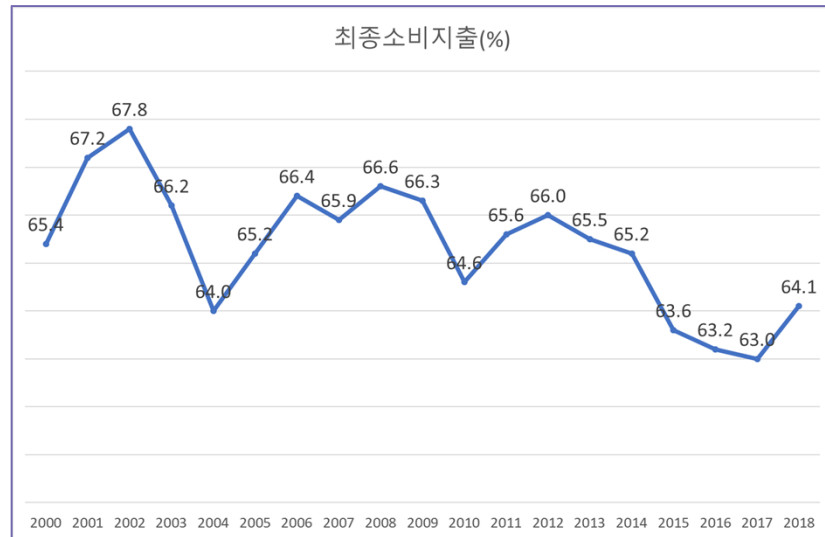
8. 주요 경제지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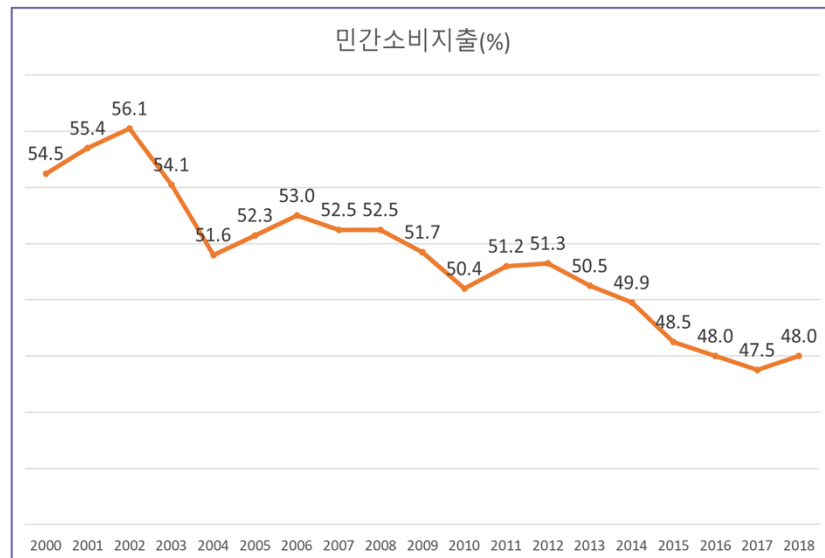
- 경제파탄?
 - 2018년 경제성장률 2.7%
 - 2012~18년 2.3~3.3%



- 물가폭등?
 - 2018년 물가상승률 1.5%



- 최종소비지출
 - 2012년 66.0%에서 2017년 63.0%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 2018년에는 64.1%로 1.1%p 증가



- 민간소비지출
 - 2012년 51.3%에서 2017년 47.5%까지 계속 감소하다가
 - 2018년에는 48.0%로 0.5%p 증가

9. 과제

- 최저임금 1만원은 일종의 '사회적 합의'
 - '2020년 1만원' 공약 불이행 → 언제까지(2021년? 2022년?) 이행할 것인가?

	최저임금(원)				인상액(원)	인상률(%)
	2019년	2020년	2021년	2022년		
2020년 1만원	8,350	10,000			1,650	19.8
2021년 1만원	8,350	9,175	10,000		825	9.9
2022년 1만원	8,350	8,900	9,450	10,000	550	6.6

- 최저임금 투쟁 영역의 다변화 → 조직화와 연동
 - 산업별·지역별·기업별 최저임금 사각지대 일소운동 + 근로감독 강화
 - 산업별·지역별·기업별 최저임금(초임) 인상운동 <단체협약>
 - 공공부문은 지자체 생활임금 인상 및 확산 운동
 - 원청 대기업이 중소기업체의 최저임금 인상분 분담
 - 납품대금 조정, 가맹점 수수료 인하
 - 재벌기업별 대중소기업간 상생방안 이행점검
- 연동형 최고임금제 도입 확산 cf. 부산시의회